##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

[시행 2017. 8. 24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, 2017. 8. 24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거대공공연구협력과), 044-202-4664

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"한국연구재단"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·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.

부칙 <제2017-7호,2017.8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